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935
----------	-------

발의연월일 : 2026. 5. 13.

발 의 자 : 서삼석 · 윤준병 · 임미애  
김정호 · 박용갑 · 조계원  
문대림 · 김원이 · 문금주  
신정훈 · 이정문 · 양부남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육성을 목적으로 광양항과 부산항에 해양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여 해운·항만·물류 기업과 연구소의 R&D 테스트베드 집적을 통한 국가 해양산업 발전을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클러스터를 관리·육성하기 위한 관리 기관 지정의 부재로 해양산업 클러스터 두 곳 모두 기업 입주율과 부지 활용 저조로 누적적자가 급증하면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본래 목적인 해양산업 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현실임.

이에 실질적인 해양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항만공사를 해양산업클러스터 관리기관으로 지정해 항만시설의 설치·사용에 따른 입주기관 유치와 선정, 임대료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

할 수 있도록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입주 지원·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입주율을 제고하는 등 해양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통해 국가 해양산업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 2항).

법률 제 호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중 “등에”를 “또는 「항만공사법」 제4조에 따른 항만공사 등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9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생략)</p> <p>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산업등 관련 전문기관, 진흥재단 등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39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또는 「항만공사법」 제4조에 따른 항만공사 등에-----.</p>